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60294(본소), 2020나6030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1. 5. 12.

판결 선고 2021. 6. 2.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소89073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1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경 C(D 대표)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하횡주관 공사를 위하여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E의 작업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고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되, 당시 F로부터 지급받던 일당 160,000원 중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10%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공사현장에서 2018. 8. 21.부터 2018. 11. 24.까지 총 75일 근무하면서 F로부터 급여 합계 13,552,560원을 지급받았다.

No	년월	근무일수	실 급여지급액
1	2018년 8월	10일	1,571,800원
2	2018년 9월	21일	3,037,020원
3	2018년 10월	25일	5,773,760원
4	2018년 11월	19일	3,169,980원
합계		75일	13,552,56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4. 392,000원, 2018. 10. 15. 756,000원, 2018. 11.15.

2,862,000원 등 합계 4,0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F로부터 받은 급여액에서 약정 일당인 120,000원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제세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18년 11월 급여와 관련한 약정금 900,000원[= 50,000원(= F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170,000원1) - 약정 일당 120,000원) × 근무일수 19일]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4만 원*21일=840,000원에서 10% 세액공제 후 756,000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당시 피고가 F로부터 급여로 지급받던 일당이 160,000원이었으므로 위 일당을 기준으로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10%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2018년 11월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인상된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차액 40,000원을 넘어 인상된 일당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근무일당 40,000원에서 10%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700,000원(= 40,000원 × 총 근무일수 75일 ×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F로부터 받은 급여 중 4,0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1,310,000원(= 4,01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범진, 판사 김 현

1) 원고는 피고의 2018년 11월분 급여부터 피고의 일당이 17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한다.